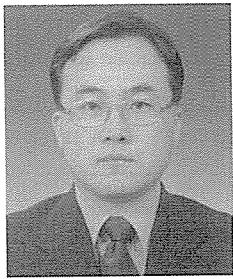


Information Technology의 세계

인터넷 네트워킹기술에도 '로열티'



金永翰

(승실대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교수)

IT 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표준기술로 채택된 기술이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을 경우 이 표준을 사용하여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여 판매할 때 이에 관련된 로열티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원천 특허기술을 많이 갖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IT 분야에서 많은 수출을 하면서도 또한 국내의 앞선 기술을 자랑하면서도 실제로는 핵심기술은 외국 기업이 갖고 있어서 이들에게 많은 로열티를 지급해오고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CDMA 기술은 대표적인 것으로 휴대폰 단말기의 수출과 함께 많은 로열티를 지불해왔다.

그러나 휴대단말기보다 더욱 중요

한 영향을 주는 인터넷 분야의 통신프로토콜 기술에서는 큰 로열티 없이 기술을 사용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인터넷 통신프로토콜의 표준을 제정하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란 단체에서 표준화된 수많은 통신프로토콜 기술들은 1996년에 제정된 RFC 2026 내의 제10장에 기술된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일부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 표준이 진행중, 또는 표준이 완료된 후 특허 관련 논란이 발생했었고 최근 들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개인들이 선뜻 IETF에서 표준화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이양하려 하지 않게 되어 지금까지의 IETF의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의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7월에 열렸던 IETF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해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임시회의가 열렸고 다음 회의부터 정식 위킹그룹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RFC 2026은 IETF에서의 표준화과정을 기술한 문서로서 내용 중 제 10장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내

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가급적 다수에게 이익을 주되 지적재산권 보유자를 존중한다는 취지 하에 우선 표준의 모든 과정(회의, 메일을 통한 논의, 등등)에서 우선 논의되고 있는 기술 내용에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권리를 합당한 선에서, 실제 대부분은 무료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문항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무료로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금번 54차 요코하마 IETF에서 이를 다루기 위한 회의가 열렸고 정식 위킹그룹이 형성되어 2003년 1월까지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현재 IPR 위킹그룹의 공식 문서는 나와 있지 않으나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문서를 시작으로 각 문서별로 디자인팀을 구성하여 빠른 속도로 문서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IETF의 최근의 이러한 위킹그룹의 탄생과 계획은 지금까지의 IETF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인터넷 네트워킹 기술에서의 로열티 걱정없이 기술개발을 해왔던 우리로서는 크게 주목하고 귀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